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622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원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110 지분에 관하여 2021.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8. 12. 7.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1434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0. 3. 4. 원고가 신청한 것과 동일한 내용(C이 원고에게 43,222,980원 및 그중 34,693,434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해당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0.9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그 지급명령은 2020. 5. 1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9/10 지분의 소유자였던 E은 2021. 10. 2.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인 F, G, C, H이 있다.

다. 피고 및 F, G, C, H은 2021. 10.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10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10 지분에 관하여 각 2021. 10.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면, C은 제1의 다.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결국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에서 C의 상속 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110 지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공유 지분 $9/10 \times C$ 의 상속 지분 비율 $2/11$)]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본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